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참 조)

제 목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공부를 반출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토 지 소 재		공부구분	수 량	지번 또는 도면번호	반출장소	반출기간	비 고
읍·면	동·리						
반출사유 :							

발 신 기 관 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 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 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